#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철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260 발의연월일: 2025. 2. 18.

발 의 자: 안철수 · 김승수 · 박덕흠

김 건・김소희・조승환

윤상현 • 고동진 • 유용원

김성원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·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.

하지만 교통환경의 변화여부와 관계없이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게 되어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 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보호구역의 지정·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때에만 실태조사를 수행하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의4).

법률 제 호

##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4제1항 중 "보호구역에서"를 "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거나 관리에 필요한 경우 해당 구역에서"로, "연 1회 이상 실시하고, 그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·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"를 "실시하고,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12조의4(보호구역에 대한 실태 제12조의4(보호구역에 대한 실태 조사 등) ① 시장등은 제12조 조사 등) ① -----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제 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 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 --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 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하거나 관리에 필요한 경우 해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 당 구역에서-----하고,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정ㆍ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여 있다. 야 한다. ② · ③ (생 략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